

03

### 2024년 학업중단 위기 학생 복귀 지원 (학업중단속려제 프로그램) 운영 기관

지역	센터명	특화사업	연락처	비고
전주	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274-1388	총괄
전주	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227-1005	
군산	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468-2870	
익산	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853-1388	
정읍	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539-8240	
남원	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633-1977	
김제	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545-0112	
완주	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291-3303	
진안	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433-2377	
무주	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324-6688	
장수	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351-2000	
임실	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640-3030	
순창	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652-1388	
고창	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563-6793	
부안	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학업중단속려제 상담, 진로상담, 위기청소년 상담	580-4518	

04

### 2024년 지역연계 정서함양 학업중단예방 (학업중단속려제 프로그램) 운영기관

지역	기관명	특화사업	연락처
전주	씩심리상담센터	심리상담/진로상담/진로 및 직업체험	063-225-1400
	창의예술연구회	조형예술테라피	010-4811-7405
	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	심리상담/진로상담/직업체험	063-903-7179
	해피드리머스심리상담연구원	집담상담/미술치료	063-276-3399
	한국원예문화진흥원	심리상담/진로상담/원예치료	010-4453-7007
익산	문화예술공동체 치유앤성장	개인상담/집담상담/예술치료	063-838-5575
	모꼬지공예문화개발원	진로체험(공예, 문화예술)	010-7160-3307
	예품대한인재양성교육개발원	인성프로그램/진로체험	063-858-0798
정읍	동지예술심리상담센터	미술치료/역할극/심리검사	010-4656-3773
	정읍시청소년수련관	심리상담/심리검사/문화예술치료	063-533-7920
장수	사회적협동조합 한결옴한결옴돌봄센터	심리상담/미술치료	063-352-0649

학업중단 예방 기관 안내의 책임입니다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

05

## 학업중단속려제 Q & A

#### ☑ 학업중단속려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?

- ▶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속려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▶ 학교는 대상 학생에게 학업중단속려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지만, 학생은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▶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 (「초·중등교육법」시행령(제32883호, 2022.8.30.))

#### ☑ 학업중단속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있나요?

- ▶ 연락두절, 행방불명 등으로 속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, 질병 치료, 발육부진, 사고, 미인정 유학, 인정 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,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경우, 학교폭력·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학업중단속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.

#### ☑ 학업중단속려제 1회 사용 후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- ▶ 학업중단속려제 1회 실시 후 속려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 실시할 때와 같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후 내부결재를 득하고 당해 학년도 속려기간 허용 범위(7주)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▶ 속려제를 연장하는 경우 앞에 이어 같은 횟수로 처리합니다.

#### ☑ 장기결석생이 자퇴(유예)를 하는 경우에도 속려기간을 두어야 하나요?

- ▶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속려제의 시행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기 결석한 학생도 속려기간을 두어야 합니다(미인정결석 연속 7일이상,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)

#### ☑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을 받아 학교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▶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업중단속려제 대상 학생이 아닙니다. 따라서 상담기관에서는 학업중단 후 학습 및 취업, 복교에 관하여 자세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,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복교할 수 있습니다.

## 학업중단예방

“우리 모두의  
책임입니다”



#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

☞ 운영 흐름도



## ☞ 학업중단숙려제란?

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「최소 1주에서 최대 7주」 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상담, 진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

## ☞ 운영기간

최소 1주 ~ 최대 7주까지(주 단위 운영), 당해 학년도 2회

## ☞ 적용 대상

### ☞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·중·고 학생

- 유예신청서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
- 검정고시 응시, 홈스쿨링,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 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

### ☞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

- 학생 관찰,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발견했거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으로 판단한 학생
-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
-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
- 기타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 부적응 학생

## ☞ 운영주체

학교장, [학업중단 예방]에 관한 사항 학교 규칙 기재

## ☞ 프로그램 운영기관

위기 원인	프로그램	프로그램 운영 기관
심리·정신	심리상담 치료	학교Wee클래스(센터)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
가정·경제	복지지원	학교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)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지역아동센터 등
학업·진로	기초학력증진	학교, 학습종합클리닉센터(교육지원청) 등
	진로상담	학교Wee클래스(센터)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진로센터 등
학교 부적응	진로·직업체험	학교, 대학교, 기업, 기관, 개인사업장 등
	대안교육	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
기타	문화·예체능활동	학교, 문화·체육시설, 청소년수련관 등
	여행	학교Wee클래스(센터)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
	기타	학교, 종교기관(템플스테이, 봉사활동 등) 등



## 대상 발생 → 숙려제 안내

- ☑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
- ☑ 학업중단 의사표현 학생, 학업중단 위기 학생 (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/누적 30일 이상 학생 포함)
- ☑ 학생·학부모 대상 학업중단숙려제 안내

## 숙려제 동의 → 숙려제 운영

- ☑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
- ☑ 대상자별 '실시 계획' 기간
- ☑ 교내, 교외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
- ☑ 외부기관 의뢰시 요청공문 발송
- ☑ 상담 또는 프로그램 실시(주 2회 이상)
- ☑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현황 NEIS 등록

## 결과 처리

- ☑ 외부기관 운영 시 운영결과 확인
- ☑ 숙려기간 출결처리
- ☑ 대상자별 '실시 결과' 기간
- ☑ 숙려제 대상 학생 등록(7일 이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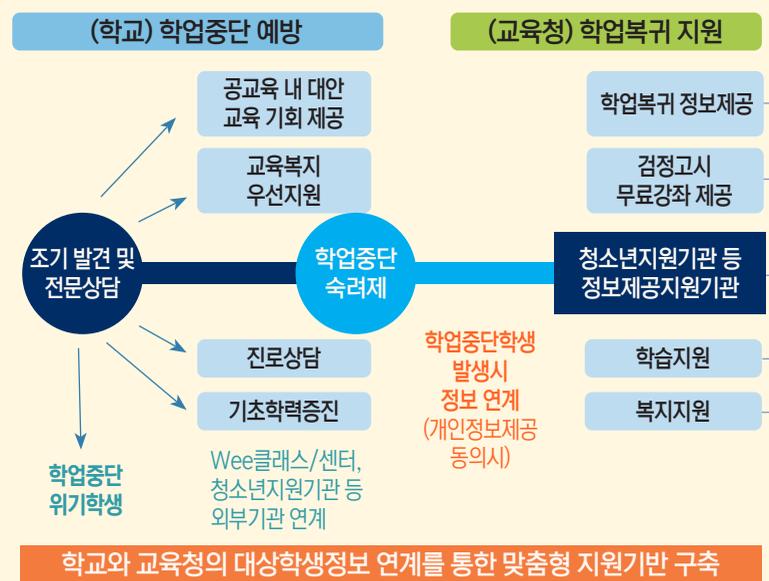
☑ 상담 담당 : 학교적응 지원

☑ 학적 담당 : NEIS 등록처리  
☑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

# 나이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안내



☞ 추진배경



## ☞ 업무처리절차



※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내는 학교장 의무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의 연계가 가능하지만 의무교육단계(초·중학생)학생의 개인 정보 중 기본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계 가능함  
※ 학생이 가급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